

##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

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 
조양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되니 2014년01월07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| 세대주 성명 | 성명<br>생년월일        | 최종신고 주소          | 신고사항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|
| 정**    | 정**<br>1959-09-06 | 강원도 속초시 청대로      | 재등록  |
| 함**    | 함**<br>1969-04-30 | 강원도 속초시 온정로      | 재등록  |
| 이**    | 이**<br>1969-09-13 | 강원도 속초시 조양로142번길 | 재등록  |
| 이**    | 이**<br>1981-04-08 | 강원도 속초시 온정로      | 재등록  |

※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(등록, 정정,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)가 이루어지며,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(「주민등록법」 제40조제2항).

( 담당자 : 장순해 문의전화 : 033-631-1406 )

2013년 12월 24일

조양동장 인

